

하남시 고시 제2016-102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동수교지구) 변경 결정 고시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동수교 지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변경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(하남시청 도시과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16. 7. 25.

하 남 시 장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	동수교	상산곡동 119-13대 일원	90,584	-	90,584	

나.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

1)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(변경 없음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90,584	-	90,854	100.0	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90,584	-	90,854	-	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

도면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62	동수교 (상산곡동119-13대 일원)	건축한계선 1m 이내 경미한 선형 변경	-소로3-367호선 일부 선형 변경에 따른 건축한계선 변경

※ 위 건축한계선 외에 변경사항 없음

라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

1) 도로

■도로 변경 결정 총괄표

류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	노선수	연장	면적
합계	1	167	1,002	-	-	-	-	-	-	1	167	1,002
소로	1	167	1,002	-	-	-	-	-	-	1	167	1,002

■도로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3	367	6	국지 도로	167	대로1-2 상산곡동 887-2도	소로2-379 상산곡동 126-2전	일반 도로		경고시 제2006-145호 (2006.5.22)	동수교
변경	소로	3	367	6	국지 도로	167	대로1-2 상산곡동 887-2도	소로2-379 상산곡동 126-2전	일반 도로		경고시 제2006-145호 (2006.5.22)	동수교

■변경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3-367	소로3-367	- 연장 : 167m - 폭원 : 6m (일부 선형 변경)	지적 경계선에 맞도록 일부 선형 변경